

# 「大明律直解」吏讀의 終結語尾에 대한 考察

姜 榮

## I. 들어가는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초기에 간행된 「大明律直解」<sup>1)</sup> (이하 直解)에 나타난 吏讀表記의 統辭的 分析을 통해서 直解吏讀의 語末 終結語尾體系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直解吏讀의 語末語尾 表記體系를 확인하는 작업의 기초 작업으로 시작된 것이다.

## II. 直解吏讀의 敘述 終結語尾

서술어미는 청자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어떤 정보를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등의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는 문장 종결에 사용되는 어미를 말한다. 直解吏讀

---

1) 「大明律直解」는 中國 明의 律書인 「大明律」을 吏讀로 直解한 것으로(대조4년,1395), 지금까지의 吏讀資料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것으로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초기에 간행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언어의 보수성을 생각할 때, 고려시대 혹은 더 나아가 신라시대의 자료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大明律直解」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朴喜淑(1985), 高正儀(1992) 등이 있다. '直解'라는 것은 '註解'에 대비되는 用語로, 다른 말 내지 다른 文體로의 翻譯을 의미한다.

에서는 평서법으로 사용된 서술종결어미 ‘-齊(제)’와 ‘-如(다)’, ‘-亦(여)’ 등이 확인된다.<sup>2)</sup> ‘-齊’는 연결법에서 나열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거나 ~거나’의 의미로 나타남), 주된 기능은 종결법이다. ‘-如’와 ‘-亦’은 완전한 의미의 종결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내포문 종결과 인용문의 종결에 사용된 경우로 나타난다.

## 2.1 인용·내포문종결: -如, -亦

‘-如(-다)’와 ‘-亦(-여)’은 인용,내포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되었다. ‘-如(든)-’는 시상형태소로 사용되어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던’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시상형태소 ‘-던’으로의 용법은 종결어미가 가지는 과거,완료등의 통사적 의미 기능을 時相의미로 확대해석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1.1 -如:-다

#### 2.1.1.1 爲 - 如

‘爲如’는 吏讀便覽에서 <ㅎ다>로 읽고 있다.

1) 凡祖父母父母亦子孫等乙故只殺死爲彌家長亦奴婢乙故只殺死爲遣他人乙殺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七十徒一年半齊(19:7b)

무릇, 祖父母, 父母가 子孫등을 짐짓 살해하며, 家長이 奴婢를 殺害하고 타인을(에게) 殺害했다 冒弄하거들랑, 杖 칠십에 徒役 一年의 형에 처할 일이다.

2) 「大明律直解」에서는 대체로 대단위의 律目を 마감하는 경우는 ‘-爲乎事’로 문장을 끝내고, 하나의 律目안에 있는 세부적인 條文을 終結하는 경우는 ‘-齊’를 사용하고 있다. ‘-爲乎事’가 문장에서 終結辭로 기능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를 ‘爲乎事是齊’의 略形으로 보고 ‘-齊’와 같은 범주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2) 子孫等亦已死爲在祖父母父母果奴婢傭人等亦家長矣已死屍體乙用  
良他人亦殺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9:7b)<sup>3)</sup>

S{[子孫等亦已死爲在祖父母父母果s1][奴婢傭人等亦家長矣已死屍體  
乙用良他人亦中殺死爲如冒弄s2]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S (直解 19:7b)

S{[자손등이 이미 죽은 조부모, 부모와s1][노비, 용인등이 가장의 이  
미 죽은 시체를 다른 사람에게 살해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다s2]  
하거들랑 장 일백과 도 삼년형에 처할 일이다}S

3) 各居/爲如/親屬乙戶內隱藏不報爲跡一戶是乎樣以冒弄合戶付籍爲  
在乙良各減二等齊(4:2a)

각기 따로 寄居하던 親屬(죄인)을 집안에 隱密히 숨겨두고, 官에  
報告하지 아니하며, 한집인양으로써 거짓으로 合戶付籍하거들랑, 각  
減 二等하을 일이다.

‘- 如’는 서술형 종결어미 ‘-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明律>에  
서는 독립된 하나의 문장을 종결하는 경우에 사용된 경우는 보이지  
않고, 내포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경우만 보인다. 鄉歌에서도 ‘-  
如’는 직해에서와 같은 통사적 분포를 보여 준다. 고대국어에서는  
서술문을 어말어미 ‘- 如(다)’로 종결하고 이에 ‘ㅅ(중기국어의 -  
슴)’등을 바로 연결하는 형식을 이용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鄉札, 直解史讀, 중기국어 자료에서 모두 확인 된다.  
향가와 중기국어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위 문장에서 S1의 주어(子孫)와 목적어(祖父母, 父母(의 屍體)와 S2의 주  
어(奴婢, 傭人)와 목적어(家長의 이미 죽은 屍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술어를 한 번만 사용하였다.

1. 향가의 예

\* 종결어미로 기능한 경우

- 1)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헌화가 4): 곱홀 짓가 받즈오림다<sup>4)</sup>
- 2)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안민가 4): 흐살디 민이 드술디고다
- 3) 來<如>來<如>來<如> (풍요 1) :오다 오다 오다

\* 인용내포문의 서술종결어미로 기능하는 경우

- 1) 慕人有<如>白遣賜立 (원왕생가 8):그릴 사롬 잇나 숨고사셔
- 2) 吾隱去內<如>辭叱都 (제망매가 3):나는 가누다 맏도

\* 단순 訓借된 경우

- 1) 毛<如>云遣去內尸叱古 (제망매가 4): 모든 니르고 가누닛고
- 2) 刹刹每<如>邀理白乎隱 (예경제불가 6): 刹刹마다 마즈리 숨은

2. 중기국어의 예 (허용1975:487)

\* 종결어미로 기능한 경우

- 1) 너도 또 이 곧 흐다 = 汝亦如是 흐다(능엄2:23)
- 2) 날 굽 히 너무 오라다(월석7:2)

4) 南豊鉉(1993c)에서는 高麗時代의 釋讀口訣 資料 「瑜伽師地論」의 口訣의 해석을 통해서 ‘ㄴㅈㅈ!’(乎音叱多:흐스다)’가 ‘應’字의 訓으로 ‘마땅히-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語辭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舊譯仁王經」에서 여러번 사용된 것으로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향가에 나타나는 다음의 문장들을 재해석하였다.

獻花歌:獻乎理音叱如 / (저를 부끄러워 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땅히 꽃을 바치겠습니다).

安民歌:國惡太平恨音叱如/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답게 처신하는 경우에) 나라가 태평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 인용내포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한 경우

- 1) 내 부터와 ㅎ야 母子 ㄷ원 後로 즐거부미 오늘 곧 ㅎ니 /업다/ ㅎ시  
고(석보11:2)
- 2) ㄷ수미 自在를 /得다/ ㅎ니(법화1:26)
- 3) 미혹다 니르니(금강삼가4:28)
- 4) 沙彌는 .... 慈悲스 ㅎ더글 /ㅎ다/ ㅎ는 쁘디니(석보6:2)

南豊鉉(1993a)에서는 신라시대의 자료를 통하여 ‘-如’의 어말어미로의 기능을 밝힌 바 있고,李丞宰(1992:176)에서는 尙書都官貼,長城監務官貼文,高麗末戶籍文書등에 나타난 용례를 통해서 고려시대에 나타난 ‘-之’가 문종결어미로 사용됨에 반하여 ‘-如’는 내포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서종학(1993:42)에서 고려시대의 자료인 ‘淸州牧官文書’의 특징적인 점으로 “事是如有米以, 田地是如出食收齊”의 ‘-如’의 용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간접화법 또는 내포문의 종결어미 ‘-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2.1.1.2. 是 - 如: 이다<吏例,羅麗,便覽,吏彙,吏師,吏語>

- 1) 現捉人乙之次罪以論決後良中在逃人乙現捉推問次前人是沙爲首/  
是如/白拷是臥乎事是良水推問爲乎矣(1:36b)

현재 체포한 사람(죄인)을 追從공모자로서 논하여 판결한 후에,도망갔던 다른 공모자인 죄인을 잡아서 推問하는 중에,먼저 잡힌 사람이야말로 主謀者이라고 고백하여 다짐(畵다짐)하는 일이므로,(후에 잡힌 이를) 추문하오되.

- 2) 他矣物色乙吾矣物色/是如云拏/他人矣錢物乙用謀取要爲拏(18:12a)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의 물건이다 말하며,다른 사람의 돈을 陰謀하여 取하려 하며.

계사 ‘-是’의 경우에는 ‘-如’가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다’라고 고백하다’, ‘-이다라고 말하다’ 등의 해석을 통하여, ‘-如’가 인용절의 종결어미 ‘-다’에 대응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현대어의 인용문의 경우에 보이는 보문소첨가라는 과정이 없이 다 음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다.

그리고 直解吏讀에서 ‘-如’가 서술종결어미 ‘-다’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如’는 중기어의 ‘-다/더’에 해당하는 시상형태소로서 과거회상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에서 그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2.1.1.3. 爲行-如

‘예문 1- 5까지는 ‘-行如’로써 과거회상시제의 ‘-았/었든’으로 해석되고 예문 6은 ‘-았/었다(고)’로 해석되어 ‘-如’가 내포인용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1) 在逃人亦身故爲去等隨去/爲行如/家口亦自願爲在乙良許聽放還(1:19a)  
도망가 있던 죄인이 죽거든 따라갔던 (가족은), 그 가족이 원하거 들랑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2) 他人亦中定婚後奪婚/爲行如/人乙良知情爲去等同罪聘財乙良沒官 (6:2a)

다른 이에게 定婚한 후인데, 奪婚하였던 사람은 (이미 정혼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거든 죄가 같고, 혼수물품은 관에서 몰수한다.

3) 謀殺/爲行如/事狀已發爲在乙良并只斬齊(19:2a)

殺害를 陰謀하였던 일이 이미 발생하였거 들랑 모두 斬刑에 처할

일이다.

4) 媼麻以上尊長乙謀殺爲乎矣謀殺/爲行如/事狀已發爲在乙良杖日百遠流遣(19:2b)

媼麻服親 이상의 순위 어른을 殺害할 陰謀를 하오되, 殺害를 陰謀하였던 일이 이미 발생하였거들랑 杖 일백의 형에 처하고 멀리 流配보내고.

5) 尊長亦族下乙謀殺爲乎矣謀殺/爲行如/事狀已發爲在乙良各各故殺罪良中依准爲減二等遣(19:2b)

그들의 순위가 손아랫 사람을 謀殺할 陰謀를 하오되, 陰謀를 하였던 일이 이미 발생하였거들랑 각각 故意로 殺人한 죄에 의거하여 (그 형에서) 2等を 減輕한 형에 처하고.

6) 凡子矣妻亦虛事以夫矣父亦女矣身乙行姦/爲行如/妄說爲誣(25:3b)

무릇, 아들의 처(며느리)가 거짓으로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가 여자(며느리)를 強姦하였다고 망령되이 발설하며.

#### 2.1.1.4. 爲有- 如

‘爲有如’는 ‘하였던’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예문 1- 4는 동명사어미가 생략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예문5의 ‘爲有如乎(흐잇다 온)’의 예로 보아서 이를 확인한 셈이 된다.

1) 曾只在逃/爲有和人/乙良必于行路限日亦未滿爲良置不許放免齊(1:19a)

일찌기 도망가 있던 사람은 비록 그 行路期限日이 차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放免하는것을 不許할 事이다.

2) 招人/爲有如他人/乙良凡人鬪傷例乙論爲笞二十齊(1:33a)

(犯罪를 위하여)불러들었던 다른 사람은 보통의 鬪傷例를 논하여 笞 二十의 형에 처할 事이다.

3) 幼小人亦外人乙招引爲自家良中二十貫乙偷取令是在乙良幼小人乙私擅用財例乙依准加二等苴四十齊招引/爲有如外人/乙良凡盜爲從例乙用良杖七十爲乎事(1:33a)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자기 집의 二十貫을 훔치도록 시키거들랑 어린 자는 私擅用財예를 준하여 이등을 가하여 笞40의 형에 처하고,(외부에서) 끌어들었던 외부인은 무릇, 도적질한 경우의 追從예를 적용하여 杖 칠십의 형에 처할 事이다.

4) 凡賊人亦曾只級面/爲有如人/是去等還本籍官門不離他盜有去等縱跡推尋令是乎矣(18:19a)

무릇,도적질을 한 이가 일찌기 刺字形을 받았던 이거든,本籍官門에 돌려 보내어 구속하여 두고, 달리 다른 도적질 죄가 있거든 縱跡을 推問하여 조사시키되.

5) 爲有如乎: ㅎ잇다온<典律,儒必,吏師>,ㅎ이다온<吏便>,하잇다온<吏集>

財物果家舍果牛馬等乙隱漏爲在乙良贓罪以論遣杖一百爲限爲며 隱漏/爲有如乎/人口財物乙良竝只入官遣(7:13a)

財物과 家舍와 말과 소 등을 隱漏하거들랑, 贓罪로써 논하고 장 일백을 한계로 하여 隱漏하였던 人口와 財物등은 모두 관에 몰수하고.

### 2.1.1.5. 爲行臥乎如 /1

‘-如’가 내포.인용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 1) 弟矣妻亦夫矣兄乙虛事以女矣身乙行姦/爲行臥乎如/妄說爲在乙良  
斬爲乎事(25:3b)

남동생의 처가 남편의 형을 거짓으로써 자기를 強姦하였다  
(고) 망령되이 發說하거들랑 斬刑에 처할 일이다.

‘如’는 종결어미 기능외에 시상형태소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는 『養蠶經驗撮要』에서도 그 용법이 확인되는 바이다. 李喆洙(1992:54)에서 “須只屋內上新爲乎矣養蠶/爲如/箔上良中”을 “모름지기 屋內에서 上新하되 養蠶하던 養箔위에”로 해석하여 ‘如’를 과거회상의 ‘-던’으로 보고 있다. 1.1.3.의 ‘爲行如’에서 1) -6)까지의 용례를 /하니던/으로 읽고, 1.1.4.의 1) - 4)까지의 용례에서 ‘爲有如’를 /하이시다/로 읽으면 모두 ‘-하였던’으로 풀이된다(관형형어미 - 隱(ㄴ)이 생략된 경우로 봄). 여기에서 ‘如’는 과거에 완료된 행동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사용되었다.

김완진(1992:351)에서는 「養蠶經驗撮要」를 통해서 ‘如’의 용법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sup>5)</sup> 하나는 계사에 연결되어 어미 ‘如’가 간

- 5) 『養蠶經驗撮要』에서 語末語尾로 사용된 ‘-如(-다)’는 繫辭 ‘-是’와 결합된 형태로만 보이고 直解吏讀에서 많은 용례를 보이는 ‘爲如’의 형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撮要』의 ‘-是如’도 인용내포문 종결에 사용된 경우이다.

예) 蠶種蛾段 擇出蠶種蛾是乎等用良 厚紙背良中 某日所出是如 開寫爲乎矣(11:3)

蠶種蛾는 擇出한 蠶種蛾이므로, 두꺼운 종이의 뒷면에 언제 所出한 것이다라고 쓰되..

접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고(-是如) 다른 하나는 어미 ‘-던’을 표기하는 경우로서 중기국어의 선어말어미 ‘-더’와 동명사어미 ‘-ㄴ’의 연결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 ‘如’를 ‘-다’와 ‘-던-’의 두 가지로 풀었다. 이러한 해석은 직해에서도 그 타당함이 입증된다. 위의 예에서도 확인되듯이 ‘爲有如’의 네 번의 용례가 모두 ‘-았/었던’으로 해석이 되어 ‘-如’의 ‘-던/던’으로의 대응에 무리가 없다. ‘爲如’를 풀면서 문제가 되었던 1.1 (1)번의 용법도 ‘-던’을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기거하던”으로 해석되어 그 행동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경우로 미완을 나타내어서 ‘-았/었던(- 行如/-有如)’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6)</sup>

### 2.1.2. -亦 : 여<吏彙>, 여,이여 <吏例>

‘-亦(여)’도 ‘-如(다)’와 같이 內包文(間接引用文)의 終結에 사용된 어미이다. ‘-亦’은 直解吏讀에서 主格, 處格, 對格助詞, 副詞形成接尾辭, 連結語尾 등으로 사용되는 多機能 借字이다. 間接引用文中에서 사용된 경우 ‘-亦’은 ‘-이라고’로 해석된다.

- 1) 原文:凡稱監臨者內外諸司統攝所屬有文案相開涉及唯非所管百姓  
 直解:凡監臨亦稱者隱內外官司亦文字行移爲臥乎所轄處所果必于百姓  
 乙親管處不喻良置(1:43b)  
 解釋:무릇,監臨이라고 칭하는 것은 內外官司가 文字行移 하은 所轄處所와 비록 百姓을 管轄處가 아니라도

6) 향가의 다음 용례는 ‘-如’의 시상형태소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郎也持以支如賜烏隱(찬기과랑가 7)->랑야 디니다시은(랑이 지나시던)

위의 예문에서 ‘-如賜烏隱’을 ‘-다시은’으로 풀이하면 향찰표기에서도 ‘-如’가 시상형태소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 2) 原文:凡稱一日者以百刻計  
 直解:凡一日亦稱云者百刻以通計齊(1:43b)  
 解釋:무릇,(법률에서) 1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刻으로써 通計하을 일이다.
- 3) 原文:一年者以三百六十日  
 直解:一年亦稱云者三百六十日乙通計齊(1:43b)  
 解釋:일년이라고 칭하는 것은 365일을 通計하는 것이다.
- 4) 原文:凡稱道士女冠者僧尼同  
 直解:凡道士女冠亦 稱云者僧人果尼僧以同齊(1:44a)  
 解釋:무릇 道士,女冠이라고 하는 것은, 僧人 尼僧과 같다.
- 5) 原文:稱衆者三人以上稱謀者二人以上  
 直解:衆亦稱云者三人以上是齊謀亦稱云者二人以上(1:44a)  
 解釋:衆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3인 이상이고 謀라고 칭하는 경우는 2인 이상 (이다).
- 6) 原文:當言千石而言十石之類有害於事者杖六十  
 直解:千石是如當言爲乎庫良中言十石亦爲有害於事爲在乙良杖六十(3:3b)  
 解釋:千石이라고 當言할 庫에 十石이라고 말하여 有害於事하걸랑 杖 60에 처할 일이다.

위 예문에서 ‘-亦’은 ‘-이라(고 하다)’로 해석되므로 引用內包文을 終結한다는 점에서 ‘-如’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亦’은 ‘-如’와는 달리 그 분포가 體言에 後續하는 경우에 限定되어 있으므로 ‘-亦’에 繫辭 ‘-이’와 終結語尾 ‘-여’가 한데 녹아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亦’을 傳來史讀音書에서 ‘이여,여 <吏例,便覽>’로 읽고 있으므로 이를 이두독음서에서 그 형태가 확인되는 ‘-是亦:-이여<便覽>’의 略形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是亦’은 直解史讀에

서 확인할 수 없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亦’은 ‘-亦’의 일반적인 用法인 主格 助詞 機能과는 다른 間接引用文의 終結語尾로 쓰이고 있다.

## 2.2 평서문서술종결: - 齊

‘-齊(제,저)’는 直解吏讀에서 평서문의 서술종결어미로 기능한다. 그의 부차적 기능으로 선택나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sup>7)</sup>

### 2.2.1. 爲- 齊 : ㅎ저(羅麗),(吏例),(吏彙) / ㅎ제(吏便),(吏彙)

1) 謀背本國潛縱他國人乙故只放縱爲在乙良本罪律乙依良施行/爲齊/(1:43a)

본국을 모의하여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따르는 사람을 고의로 放縱하거들랑 본국의 죄율에 의해서 시행하올 일이다.

2) 官司馬牛亦官司物色乙喫破爲去等罪分論遣物色生徵/安徐爲齊/(16:5b)

官司의 말과 소가 관사의 물건을 들이 받아서 파괴하거든,(담당 관리에게)그 죄만 논하고 물건의 배상은 하지 아니하올 일이다.

3) 又公貼乙損壞爲在乙良一道是去等笞四十每二道加一等罪止杖六十/爲齊/(17:2a)

또한 公貼을 損壞하거들랑,一道이거든 笞40,각 二道마다 1등을 더하여 杖60에서 그 벌을 그칠 일이다.

4) 捧上不冬爲在乙良許所自理爲遣更良字細窮問/爲齊/(26:16b)

捧上하지 아니 하거들랑 許所自理(죄인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것)를 허락하고 다시 자세히 窮問하올 일이다.

5) 子孫亦祖父母父母屍體乙毀棄/爲齊/奴婢及傭人等亦家長矣屍體乙

7) 본 논문 122~123페이지 참조.

毀棄爲在乙良斬齊(18:15b)자손이 조부모,부모의 시체를 毀棄하거나 노비및 용인등이 가장의 시체를 毀棄하거들랑 참형에 처할 일이다.

‘齊’는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문장을 종결할 때 사용되었는데, ‘爲乎事是齊’의 略形으로서, ‘爲乎事’, ‘爲齊’, ‘是齊’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 略形들을 모두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齊’는 원래는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종결의 평서법서술어미였으나 구속력이나 당위성을 표현하는 법률서의 해석에서 그 의미가 강화되어 명령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서법서술어미이지 명령형 종결어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직해이두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결 명령어미는 찾아 볼 수 없다. ‘齊’가 終結語尾로 사용된 것은 「淨兜寺造塔記」(1031)에서 부터이며, 이전에는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之’로 문장을 종결하였다.(南豊鉉1976:323)

### 2.2.1.1. 令是<sup>8)</sup> - 齊

#### 1) 配所良中當役四年/令是齊/(2:2b)

配所에서 부역을 4년동안 시킬 일이다.

#### 2) 凡文武官員亦父祖職承繼合當爲在乙良嫡長子孫乙用良傳襲/令是齊/(2:2b)

무릇, 관원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직을 승계함이 합당하거들

8) 어간 ‘令是-’는 중기국어의 동사 ‘시키-’에 해당한다. 典律通補, 史讀便覽, 史讀語錄 등에서 ‘令是-’를 ‘시키-’로 읽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是’는 ‘令是-’의訓 ‘시키-’의 어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訓借 ‘-이’로 모음을 첨기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의 자료인 華嚴經寫經造成記(755)에서도 ‘令是-’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令是-’은 전통적으로 첨기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令是-’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는 것은 11세기 중엽의 자료인 「淨兜寺造塔記」에서이다.

랑 적자장손으로서 승계하도록 시킬 일이다.

3) 實則老弱殘疾等亦仰屬官良中陳告爲良在等推考閱實放免軍役/令是齊/(14:5b)

실제로 老弱疾病인 자가 담당관사에 가서 陳告하거든 사실인지를 검토하여 軍역을 면제시켜 줄 일이다.

4) 被誣之人亦至死罪良中已決爲良在等誣告人乙死罪良中反坐/令是齊/(22:4b)

무고를 당한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미 판결을 받아 시행하였거든, 무고한 사람을 사형죄로 똑 같이 (처벌 할) 일이다.

5) 凡街巷道路乙侵占爲家舍造立爲旽園圃乙添作爲在乙良杖六十遺各令依舊/令是齊/(30:2a) 무릇, 市街나 村巷의 道路를 함부로 占用하여 家屋을 建築하며, 과수원이나 채마밭을 만들거들랑 장 육십의 형에 처하고, 原狀復歸토록 시킬 일이다.

### 2.2.2. 是 - 齊

1) 軍丁段軍官及軍人矣數外餘丁/是齊/(1:13b)

軍丁은 軍官 및 軍人의 數外의 餘丁이다.

2) 所犯罪乙決斷不冬爲有遺財產必于沒官爲在乃犯罪人亦配流不冬爲在乙良猶亦未入官/是齊/(1:25a)

그 범죄를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이 비록 관에 몰수되지 않았더라도,<sup>9)</sup> 범인이 流配되지 않았거들랑, 오히려 관에 沒收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일이다.

3) 必于百姓乙親管處不喻良置其凡事皆在手端爲在如中亦是監臨/是

9) ‘- 去乃(-거나)’는 선택형 나열형 어미이지만 본 항에서 보는 것 처럼 ‘必于(비록)’와 호응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必于 - 去乃(비록 -(하)더라도’의 文型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된다.

齊/(1:43b)

비록 백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건이 모두 (자신의) 수중에 달려있다면 역시 監臨(이라 하울 일)이다.

위의 표현들도 역시 ‘爲乎事是齊(하울일 이저)’에서 ‘爲乎事’가 생략된 형으로 볼 수 있다.

### 2.2.3. 爲 - 乎事

1) 報狀內必于差錯爲去乃不害於事爲在乙良勿論罪/爲乎事/(3:4a)

보고서내에 비록 착오를 있더라도 일에 해가 되지 않거들랑 죄를 논하지 아니할 일이다.

2) 軍人亦爲盜/爲去等/必于刺字乙免爲在乃三犯是去等一體絞死/爲乎事/(18:9a)

군인이 도적질을 하거든, 비록 刺字刑을 면하게 하더라도 3번 범 죄하거든 모두 絞死하울 일이다.

3) 凡子孫亦祖父母父母矣教令乙違犯不從爲於奉養有闕爲在乙良杖一百/爲乎事/(22:10b)

무릇, 자손이 조부모, 부모의 敎令을 어기고 불복하며, 봉양을 하지 아니 하거들랑 장 일백에 처할 일이다.

4) 官吏亦干事人亦中勒留爲去乃強亦生事爲去乃物物以侵勞受物爲去等出錢人乙良不坐罪/爲乎事/(23:4a)

관리가 일에 관련된 사람에게 강제하거나 억지로 일을 만들거나 物物以侵勞하여(갓가지 일로써 힘들게 하여) 재물을 받거든, 돈을 준 사람은 벌주지 아니할 일이다.

### 2.2.4. 爲- 臥乎事

1) 自矣子息乙他戶良中強置冒稱遺棄小兒爲臥乎所毀亂風俗/爲臥乎

事/是良跡/不在此限齊(4:4b)

자신의 자식을 다른 집에 강제로 놓아두고 ‘遺棄小兒’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바,風俗을 毀亂하는 일이므로 (처벌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할 일이다.

2)或冬月良中冷水乙罪人矣身體良中流注爲臥乎事(28:10b)

혹 동짓달에 찬 물을 죄인의 몸에 흐려내리게 하는 일(이다).

3)准枉法是如論爲彌准盜是如論/爲臥乎事段/枉法及盜罪良中依憑准論爲罪止杖一百流三千里遺斂面乙良并免爲齊(1:43a)

枉法에 준하여 논죄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盜賊罪에 준하여 논죄할 일이다(라고) 하는 일은 (眞犯과는 달리) 枉法과 盜罪에 준하여 논죄하되 杖 일백과 流 삼천리의 형에 그치고(刺字刑은 모두 免除할 일이다).

### 2.2.5. 無 - 乎事

1)婦人亦必于夫家得罪被黜爲良置其子亦有官職爲去等子矣官職以同論/爲臥乎事/段母子亦相絕爲乎道理/無乎事/(1:15a)

부인이 비록 夫家에서 죄를 얻어, 쫓겨나더라도 그의 자식이 官職에 있거든 자식의 官職으로써 같이 논할 일이다하는 것은 모자가 서로 인연을 끊는 일은 없을 일이다(없게 하올 일이다).

### 2.2.6. 是 - 乎事

1)去任段政滿遞還是去乃在喪是去乃致任等類/是乎事/(1:16a)

‘去任’이란 政滿遞還(임기만료)이거나, 喪을 당한 경우가거나, 致任 등과 같은 部類의 일을(이르는 것이다).

2)贓亦加至四十貫/是沙/滿數是去等必于三十九貫九百九十文數良中准至爲良置一十文亦不足爲良在等四十貫加罪良中同論決斷爲乎所不喻是乎事(1:41b)

贓物이 40관이 되어야만 滿數이거든(加罪하는 것이거든), 비록 39관 990문이라는 숫자에 준하여 이르더라도 10문이 부족하거든, 또한 40관에 해당하는 加罪와 같이 동일하게 결단하여 처리할 바가 아니이을일(이다).

### 2.2.7. 爲乎事是 - 齊

1)官果吏果乙差等以遞減科斷爲臥乎等用良此律乙不用/爲乎事是齊/(1:35b)

‘官’과 ‘吏’를 차등을 두어 遞減科斷(罪)하는 등으로써, 이 규정(公事失錯을 스스로 깨달아 신고한 자는 그 죄를 免罪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을 일이다.

위 예문에서 보이는 ‘爲乎事是齊’는 ‘爲乎事’, ‘爲齊’, ‘是齊’ 등의 完全形으로서 ‘-하을 일이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 2.2.9. - 齊/ 爲乎/ - 齊/ 爲去乃 /1

1)又自壇亦財物乙科斂爲乎矣或數少收/齊 爲乎/物乙數多收/齊 爲去乃/ (23:3a)

또한 마음대로 재물을 부과징수하되 혹시 “소액을 징수할 일이다”한 재물을 “다액징수할 일이다”한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하거나.

위 예문에서 ‘-齊’가 평서법 서술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은 앞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직접인용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할 일이다라고 한 것을 달리 -할 일이다라고 해석하거나’의 의미이다. 이 경우에 ‘-爲去乃’는 가림법어미로 기능한다.

안병희(1992:339)에서는 ‘爲乎事’와 ‘爲臥乎事’를 “당위성을 나타

내는 명령법”과 “설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爲乎事’와 ‘爲齊’, ‘是齊’를 모두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진 동일한 표현으로 보고자 하는데, 이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略形으로 보고, 완전형으로 “爲乎事是齊(1:35b)”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표기상의 번거로움으로 피하고자 “爲齊, 爲乎事, 是齊”등의 略形을 취한 것으로 본다. 엄밀하게 보면 “爲乎事”의 경우는 관형구로서 종결사의 기능을 한 것으로, 하나의 관행으로 받아들여 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大明律直解에서 문장을 종결하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이는 하나의 律目이 끝날 때 종결어미를 취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와(凡申明亭房屋乙破毀爲~~於~~板榜乙毀破爲在乙良杖一百遠流(26:1a)) 종결사 ‘-乎事’로 하나의 律目を 마감하는 경우, 그리고 각 律目の 細則의 내용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종결어미 ‘-齊’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爲乎事’는 ‘爲齊’, ‘是齊’ 보다는 보다 큰 단위의 종결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동일한 내용의 표현법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기능에 있어 慣行에 의한 差異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高正義(1992:195)에서 ‘爲乎事’는 대단락의 文尾에 사용된 양식으로, ‘爲齊’는 소단락의 文尾에 사용되는 양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승재(1992:175)에서는 ‘-齊’가 尙書都官貼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종결어미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종학(1993:34)에서는 ‘鳴鳳寺慈寂禪師凌雲塔碑’에서 종결어미로 ‘齊’가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直解吏讀에서 사용된 ‘-齊’를 평서법 종결서술어미로 볼 수 있다.<sup>10)</sup>

10) 향가에서도 ‘齊’는 평서법 서술종결어미로 기능하고 있다.

- 1) 免史年數就音墮支行<齊> (모죽지랑가 4)
- 2) 心未際叱勝逐內良<齊> (찬기과랑가 8)

그러나 다음에 보이는 ‘齊’의 용례를 통해서 ‘齊’의 다른 통사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해석하면 ‘齊’가 종결어미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汝於多支行<齊>教因隱 (원가 3):인용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함.

최남희(1990:30)에서는 어간에 ‘齊’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를 ‘齊’가 청유형으로 사용된 경우로 보고, ‘齊’가 선어말어미를 앞세우는 경우를 ‘齊’가 서술어미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 ‘齊’의 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물론 향가의 정확한 해독이 선행된 후에 논할 일이지만, 최남희(1990)의 논의로만으로는 이러한 구분의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향가에 나타난 ‘齊’는 모두 평서법 서술종결어미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최남희(1990)은 신라향가의 분석에서 어말종결어미를 다음과 같이 결론하였다.아래의 결론에 의하면 直解史讀와 비교할 때 서술법과 의문법에서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1.서술법

- 1) -다/-라: 如,羅,多,邪,耶
- 2) -야: 也
- 3) -저: 齊,制(화자의 바람,소원을 나타내고 중기국어의 ‘-저라’에 해당됨)

2.물음법

- 1)인칭물음법: a.-고: -古(물음말이 있는 경우)  
b.-가: -去(물음말이 없을 경우)  
c.-덩: -丁(물음말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됨)
- 2)비인칭물음법:물음말의 유무에 상관하지 않고 사용함.  
a.-아리: -下是  
b.-고: -古  
c.-고: -遺

3)명령법: a.낮춤: -라(羅,羅良) b.높임: -시서(賜立)

4)청유법: -저:-齊

1)男女混雜使內/齊/飲酒食肉爲在乙良家長乙杖八十遣僧道乙良同罪  
還俗令是乎事(12:8b)

남여가 어울리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하는 경우에는  
가장을 장 80에 처하고 스님인 경우에는 동일한 죄를 물어 還俗하  
게 할 일이다.

2)馳車下坡如爲在勢不得已緣故乙仍于傷害人命/爲齊/時或重物乙同  
舉爲如可力不能爲同舉人乙致損/爲齊/爲等如初無害人之意爲遣(19:6b)

수레가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 다른이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다가 힘에 부쳐서 같이 들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처음에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3)六十九歲以下人亦徒役年限內良中七十到來/齊/初亦徒役時無病爲  
有如可限內良中廢疾有在乙良竝只老疾例以贖罪爲乎矣(1:23b)

69세 이하의 사람이 徒役年限內에 七十歲에 이르게 되거나, 처음  
徒役시에는 병이 없다가 期限內에 병에 걸리는 경우는 모두 老疾의  
예로써 속죄시키되.

4)謂罪囚乙推考次或證人亦虛稱/爲旆/或依法推問取招服/爲旆/及刑  
罰乙議論次所見錯誤/分是遣/受贓物爲乎情狀/無齊/及法外用刑罪  
狀加減/無齊/從輕失入重/爲去乃/從重失出輕者乙良各以所剩罪以  
論齊(28:11b)

무릇, 죄수를 推考하는 중에 증인이 거짓으로 말하며, 혹 법에 의  
거하여 추문하여 죄인의 自服을 받으며, 및 형벌을 논죄하는 중에  
소견의 錯誤였을 뿐이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및 법외의  
刑을 사용하여 죄상(罪狀)을 加減하는 일이 없거나, 실수로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로 처리하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처리한

자는 각각 所乘罪로써 논(하올 일)이다.

위의 법조문을 해석해 보면 위에서 吏讀字 ‘-齊’는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해석을 해 보면 ‘- 거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등 나열어미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喆洙(1992:39)에서도 『養蠶經驗撮要』의 자료를 통해서 ‘-齊’가 연결어미로 사용된 경우를 밝히고 있는데<sup>11)</sup> 鄉歌에서는 ‘-齊’가 연결어미로 기능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위 예문4)는 ‘-無齊 - 無齊 - 爲去乃’의 문장구성으로 ‘-齊’를 ‘- 나 - 나’로 해석하고 나열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이 예문4)의 구성은 또한 나열어미가 총 망라된 것인데 즉, ‘- 旣, - 遣, - 齊, - 去乃’가 한 문장에서 사용되었다. 이 문장을 통해서 ‘-齊’를 나열어미의 부류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李喆洙(1992:39)에서는 『養蠶經驗撮要』의 吏讀에서 ‘-是齊’는 ‘-이다’에 대응되는 語辭로 종결형으로 쓰인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 接續形으로 사용된 예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 是齊’가 ‘- 是遣’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直解吏讀에서는 ‘-齊’가 종결어미로 주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어미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나열형으로 선택 나열로 ‘-遣(고)’과는 그 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2.3.3. 나열어미 참조)

11) 李喆洙(1992:39)에서는 『養蠶經驗撮要』에서는 ‘-齊’가 ‘爲齊’와 ‘是齊’의 형으로 나타나고 문장에서 종결형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접속형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접속법의 나열형어미로 나타나는 ‘-是遣(이고)’, ‘-爲遣’의 ‘-遣’과 그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1) 向前高致亦上品是齊 其中圓厚代體爲旣(5:8)

2) 蠶矣佐伊亦不濕不積者隱無病蠶是齊 片片濕潤成白積...(69:8 - 70:1)

南豊鉉(1993a:13)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이두자료를 정리하면서 8세기 초의 자료인 『甘山寺阿彌陀佛像造成記(720)』의 “後代追愛人者比善助在哉(후대의, 돌아가신 분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善業을 도왔으면 (하고 회망)한다)”를 통해서 문장의 종결사로 기능하고 있는 ‘-哉’가 이두자료에서 보이는 최초의 ‘토’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音假字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 ‘哉’가 향찰, 이두에서 보이는 ‘-制’와 ‘-齊’로 교체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南豊鉉(1991:406)에서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의 다음예를 통해서 ‘-哉’가 ‘-거나’로 해석되는 예를 보이고 이를 直解吏讀의 ‘-齊’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에서 ‘-哉’와 ‘-齊’의 기능의 일치를 엿볼 수 있으며, 그 사용시기로 ‘-哉’가 ‘-齊’보다 앞선 시기에 종결어미에 借字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右諸人等 若大小便爲哉 若師宿哉 若食喫哉 爲者 香水用尔 沐浴令只但 作處中 進在之.

위의 여러 사람들이 혹 대소변을 하거나, 혹은 師宿을 하거나, 혹은 밥을 먹거나 하면, 香水를 써서 목욕시키어야만 짓는 곳에 돌아갈 수 있다.

### Ⅲ. 直解吏讀의 疑問 終結語尾

청자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종결할 때 사용하는 어미를 의문어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해이두는 직접적인 청자가 존재하는 口語를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어떤 상황의 서술에서 문장내의 주어의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를 위해 사용되었다. 直解吏讀에서 ‘-乙去’와 ‘-去’의 두 형이 나타난

다. ‘-去’를 ‘-乙去’의 略形으로 보면 ‘-(乙)去’가 유일한 의문어미이다. 내포문에 사용된 경우만 보인다.

3.1. 내포문의문종결: - 乙去

‘-(乙)去’는 ‘-(으)르까 (의심하여)’를 기저구조로 하는 의문 어말어미로 나타난다.

1) 他人亦現告爲/乙去/知想只遣<sup>12)</sup> 現告爲弥(28:28a)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알아서 생각하고 (스스로)신고하며.

2) 他人亦現告爲/乙去/知想只遺物主處還給爲在乙良減罪二等齊(28:29a)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알아서 생각하고 물건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 주거들랑 (원래의) 죄에서 2등을 감할 일이다.

‘- 乙去’는 중기국어의 ‘-을가’에 해당하는 의문종결어미이다. ‘- 乙去’의 생략형으로 ‘-去’도 있다( 문맥상 같은 분포를 보이면

12) 直解吏讀에서 ‘知想-’의 분포는 ‘知想只遣(1:13,1:28,19:10,7:8)’,와 ‘知想是遣-’, ‘知想只在乙良(1:37)’, ‘知想只乎矣(7:8)’ 등으로 나타난다. 李承宰(1992:129)를 통해서 ‘想知-’ (尙書都官帖 34-36 /1262년), ‘知想-’ (高麗末戶籍文書 둘째 폭 20/1390-1391년)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사 ‘想知-’는 고려 이른 시기의 자료로부터 확인되는 셈인데 이 승재(1992)는 ‘想只-’를 洪淳鐸(1974)의 의견을 따라서 이를 ‘너지-’로 이해하고 ‘知想-’을 복합동사로 보았다. 그리하여 ‘知想-’을 ‘알다 + 너기다’의 의미로 ‘알너지-’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앞에서 ‘是’와 ‘只’의 첩기당용자로서의 용법을 설명한 바 있으므로(‘습是-’와 ‘습只-’의 용례), ‘知想只-’와 ‘知想是-’를 동일한 동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하나 이의 독법에는 소신이 없다. 이승재(1992)에 따라 복합동사로 받아 들이는 경우 “알다:知”동사는 “생각하다:想”동사보다 하위의 개념이므로 이의 복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知想-’에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값을 주고 ‘너지다’로 보고자 한다.

로 동일한 표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乙’은 ‘어간의 말음 ‘-ㄹ’을 표기하고 있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을까(우려하여)’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순수한 의문형어미의 사용 예를 찾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가에는<sup>13)</sup> 직해이두에서 보이는 의심을 표현하는 의문법은 보이지 않고 독백형의 완전한 의문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이는 향가가 문학성을 가진 작품이라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비교하면 「大明律直解」는 법률서로 어떤 죄상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명하고 있는 점으로, 그 성격상 완전한 의미의 의문문이 사용될 수 없었다고 본다.

### 3.2. 내포문의문종결: - 去

1) 犯法人亦他人亦現告/爲去/知想只遣先告爲在乙良聽減一等(1:13b)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알아서 생각하고 먼저 자수하거들랑 들어보고 (원래의 죄에서) 1등을 감한다.

2) 難苦/爲去/向人面避爲要因而在逃爲在乙良杖一百停職不用爲彌(2:5a)

13) 鄉歌에서는 의문형어미 ‘-고(古)’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최남희(1990:21-27)에서는 고대국어(향가의 표기)의 의문어미를 인칭물음법과 비인칭물음법으로 구분하고 인칭물음법으로 ‘-고(古):의문사가 있을 경우, -가(去):의문사가 없을 경우, -덩(丁):의문사의 有無에 상관없이 사용됨’ 등을 들고 있다. 향가에 나타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二盼隱誰支下焉[古](처용가)-> 두볼흔 누기하언고
- 2)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도천수관음가)-> 어드리 브을 慈悲여 근고
- 3) 此身遺也置遺四十八大願成遣賜[去](원왕생가)-> 이 몸 기타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실가
- 4)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안민가)-> 이 따홀 바리곡 어드리 가늘덩
- 5) 去奴隱處毛冬乎[丁](제망매가)-> 가는 곧 모드론덩

어려운 일을 당할까 (생각하여) 이를 피하려, 이로 인하여 도망치  
거들랑 장 100에 처하고 파면시키고 임용하지 아니하며.

3) 官員書吏令史亦其矣所犯事發露/爲去/聞知爲遲遲錯事乙回避爲要  
文案改補爲良在等(3:8b) 관원, 서리, 령리가 그의 범죄 사실을 (남이)  
발로할까 들어서 알고 미뤄 둔 일을 회피 하려(고) 문서를 바꾸고  
보충하였거든.

‘去’가 ‘- (으)ㄹ까’(걱정, 우려)에 해당하는 어말어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는 중기국어의 물음어미 ‘- 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爲去’는 ‘爲去去’의 생략형으로, 이두표기의 경우 관형형어미 ‘隱  
(은/ㄴ) 乙(을/ㄹ)’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sup>14)</sup> 결론적으로 ‘- 乙  
去’와 ‘-去’를 동일한 물음법 종결어미로 처리하는데 허용

14) 이두표기의 경우 관형형어미 ‘隱: -ㄴ’, ‘乙: -ㄹ’이 대부분 생략되었다.  
是隱喻:是喻, 爲隱喻:爲喻, 爲隱所:爲所, 爲去等隱:爲去等, 是乎隱喻:是乎  
喻爲乎乙所:爲乎所, 爲乎乙喻:爲乎喻

향찰자료의 경우는 <明律>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므로 ‘隱, 爲, 乙,  
尸’ 등이 빠짐없이 표기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맞춤침기와 더불어 고  
대인들의 형태표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고창수(1992:84)에서는 “형태  
확보의 원리(맞음침기와 기능범주표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고창수(1992)는 고대국어에서 표기법의 기본 원리로 음소주의가 아  
닌 형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1) 去<隱>春皆理米(모죽:1)/ [간] 봄 그리매
- 2) 露曉邪<隱>月羅理(찬기:2)/ 날호[안] 두터
- 3) 去奴<隱>處毛冬乎丁(제망:8)/ 가[논] 곳 모돌 오더
- 4) 善芽毛冬長<乙>隱(청전:7)/ 善芽 모돌 [길]은(善芽가 자라지 못 한)
- 5) 善提向<爲>道乙迷波(참회:2)/ 아[언] 길을 이바(잃어)
- 6)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모죽:2)/ 모돌 곁샤 울[을] 이 시름
- 7) 臣隱愛賜<尸>母史也(안민:2)/ 신은 두스[살] 어시여(臣下는 사랑하  
는 어머니여)

(1975:501)에서는 씨끝 ‘-을’의 개입은 필연적이거나, 이 경우에는 시제를 표시할 뿐 관형어의 기능을 부여하는 문법적 의의는 상실된 것이라고 한다.

허용(1975:501 - 504)에서는 말할이가 들을이를 높이지 않는 1,3 인칭 물음월에 물음말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물음씨끝으로 「-가」가 쓰이게 되고 이를 「-가」물음법이라고 하였다. 그 용법의 의미 중의 하나로 “마음 속에 품은 의심의 표현”을 들고 있다. 직해에 나타나는 용례는 중기국어의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해당되는 예를 다음에 보인다.아래에 보인 예문에서 ‘-(으)르까’는 대부분 ‘-(으)르까(생각, 걱정, 두려워)하여’의 의미인데 직해이두의 ‘-(乙)去’와 동일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 (1) 비들 만히 니르면 몬 삶가 **햏야**(석보 6:24)
- (2) 목수미 몬 이실까 너겨 (월석 21:217)
- (3) 이 도흔 藥을 이제 예 뒷노니 너희 먹고 몬 도흠가 시름 말라(월석17:20)
- (4) 幽深**햏** 길해 해 길 널가 전노라 = 幽徑恐多蹊(두언 25:16)
- (5) 佛道 | 길오 머러 .... 受苦**햏**가 分別**햏**물 가줄비니라(월석 13:15)
- (6) 나가 삶가 저**햏**샤(천강곡 상.기 46)
- (7) 獄主 | 더 설븐 짜해 읍기**햏**가 **햏**야 맛굶디 몬**햏**다이다(월석 23:85)

金泰均(1971:21)에서는 ‘-(乙)去’의 ‘-去’를 ‘-거’로 읽고 현대국어의 형식명사 ‘것’과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오히려 ‘是去有乙’이 ‘是去乙’과 같이 ‘이거을’로 해석되어 ‘-去乙’

의 어미기능을 예외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去' 뒤에 분포가 넓은 격조사, 예컨대 주격의 '亦', 처격의 '-矣', 공동격의 '-果'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爲乙去乙'의 용례를 다른 이두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이 '-去'를 형식명사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위 용례의 '-去'를 의문범어미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先語末語尾로의 용법을 인정하는 것이 자료의 해석상, 그리고 이두문법체계의 이해상 훨씬 자연스럽다는 설명상의 타당성을 지닌다. 즉 '-去乙'을 '-것을'로 해석하지 말고 어미 '- 거을'로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2.3. 나열어미 항에서 '-是果'와 '-在是果'를 풀이하면서 밝히게 되겠지만, 直解吏讀에서 형식명사로 기능한 것은 '是(이)'로 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洪淳鐸(1974:29)에서도 이두자료들에 나타난 '是'의 형식명사로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 IV. 맺 음 말

直解吏讀에서 종결법으로 사용된 語末語尾는 평서법의 서술어미 '-齊(제)'와 '-如(다)', '-亦(여)' 그리고 의문범어미 '-去(가)', '-乙去(을가)' 등이다. 결국 直解吏讀에서는 평서법의 서술종결어미와 의문종결어미만이 확인된다. 鄉歌나 고려가요와 비교할 때, 直解吏讀의 종결어미가 이처럼 다양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인 법조문에 이용된 이두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參 考 文 獻

- 강 영(1987), “音節末形態音素 表記借字에 대한 考察”(鄉歌를 中心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강 영(1990), “複合動詞에 관한 一考察”, 『韓國語學新研究』, 翰信文化社.
- 강 영(1991), “북한의 이두연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녹진출판사.
- 고정의(1987),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의 史讀”, 울산어문논집3집, 울산대 국문과.
- 고정의(1992), “大明律直解의 史讀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고창수(1992), “고대국어의 구조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승곤(1991), “이두 「고(遺)」와 「고(古)」의 용법고”,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김완진(1980), 『鄉歌 解讀法 研究』, 서울대 출판부.
- 김태균(1971), “大明律直解에 있어서의 時制研究”, 대한민국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어문학계 6.
- 남풍현(1974), “13世紀 奴婢文書의 史讀”, 論文集(檀國大) 8집.
- 남풍현(1976), “高麗時代의 帖文(慈寂禪師凌雲塔碑陰銘)과 史讀”, 국어국문학 72,73합본.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 研究』, 단대출판부.
- 남풍현(1990), “史讀·口訣”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국어연구회, 동아출판사.
- 남풍현(1991a), “新羅時代 史讀의 ‘哉’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민음사.
- 남풍현(1991b),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에 대한 어학적 고찰”, 東洋學21집. 단대 동양학연구소.
- 남풍현(1992a),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의 解讀”, 古文書研究2. 韓國古文書學會.
- 남풍현(1992b), “古文書의 史讀 解讀(柳璥功臣錄券을 中心으로)”, 정신문화연구 15권.
- 남풍현(1993a), “新羅時代의 史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 남풍현(1993b), “新羅時代 史讀文의 解讀”, 季刊書誌學報 9호.
- 남풍현(1993c), “高麗時代의 釋讀口訣과 그 文法(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文字體系)” 한국언어학회 가을 연구회 講讀要旨(93.10.16)
- 박병채(1966), “鄉歌 表記의 源流的 考察”, 국어국문학 32.
- 박병채(1967), “古代國語의 格形 研究”, 고려대 인문논집 8.
- 박병채(1968), “古代 三國의 地名 語彙考”, 백산학보5, 백산학회.
- 박병채(1969), “鄉歌 表記의 常用字 索引”, 민족문화연구3,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 박병채(1971), 「古代國語의 研究」, 고려대 출판부.
- 박병채(1983), 「홍무정운 역훈의 신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世英社.
- 박성종(1993a), “朝鮮初期의 史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문학과지성사.
- 박성종(1993b), “李和開國功臣錄卷의 史讀와 그 解讀”, 古文書研究4, 古文書學會.
- 박영순(1985), 「韓國語 統辭論」, 집문당.
- 박영준(1991), 「국어 명령문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 박희숙(1985), “大明律直解의 史讀研究”,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 배대은(1985), 「朝鮮朝初期의 史讀助詞研究」, 螢雪出版社.
- 배대은(1990), “이두 ‘- 如中’ 게 어사에 대하여”, 배달말 15, 배달말학회.
- 서종학(1990), “史讀의 文法形態表記에 관한 歷史的 研究” 서울대박사학논문
- 서종학(1993), “高麗時代의 史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문학과 지성사.
- 서태룡(1988),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국어학회.
- 안병희(1977a), “養蠶經驗撮要和 牛疫方의 史讀의 研究”, 東洋學 7.
- 안병희(1977b),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 一志社.
- 안병희(1984), “典律通補와 그 史文에 대하여”, 『俞昌均博士: 卍甲紀念論文集』, 啓明大出版部.
- 안병희(1985), “大明律直解의 史讀의 研究”, 奎章閣 9.
- 안병희(1987), 『史文과 史文大師』, 國語學研究選書11, 塔出版社.
- 안병희(1992), 「國語史 研究」, 서울:文學과知性社.

- 양주동(1965), 『古歌 研究』, 서울:一潮閣.
- 유창균(1991), 『삼국시대의 漢字音』, 민음社.
- 이기문(1981), “史讀의 起源에 대한 一 考察”, 震檀學報 52호.
- 이성무(1990),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歷史學報 제125집, 歷史學會.
- 이승재(1987), “‘將來’考”, 國語學 16.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史讀』, 국어학회, 太學社.
- 이재룡(1992), “朝鮮時代의 性理學的 規範觀”(특히 禮와 法の 關係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철수(1992), 『養蠶經驗撮要의 史讀研究』, 韓國學研究叢書6, 仁荷大出版部.
- 장세경(1991), “‘양잠경험활요’와 후기 이두 어휘집의 어휘 대비”,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같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장지영, 장세경(1988), 『이두사전』, 정음사.
- 정 광(1988), 『司譯院 倭學 研究』, 太學社.
- 정 광(1992), “국어사 자료 연구”, 『國語學研究百年史』, 一潮閣.
- 정렬모(1965), 『향가 연구』, 평양:사회과학원 출판사.
- 천소영(1990), 『古代國語의 語彙研究』, 민족문화총서3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소.
- 최남희(1986),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弘文閣.
- 최남희(1990), “고대 국어의 마침법 연구”, 한글 208호, 한글학회.
- 최남희(1991), “고대국어의 제약법 이음씨끝에 대하여” 『東義語文論集』 제5집,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최남희(1992), “고대국어의 맺음씨끝 연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 학술자료사.
- 최승희(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 허 옹(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흥식(1988), 『韓國의 古文書』, 민음社.
- 홍기문(1956), 『향가 해석』, 평양:과학원.
- 홍기문(1957), 『리두 연구』, 평양출판사.
- 홍순탁(1974), 『史讀 研究』, 光文出版社.
- 『大明律直解』(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本), 1986년 保景文化社 影印.
- 『校訂 大明律直解』(活字本), 朝鮮 總督府 中樞院 昭和十一年.

『大明律直解』(解釋本),法制處 資料 13輯, 法制處 1964.

NIDA.E (1949), MORPHOLOGY. Ann Arbor:University of Michigan.